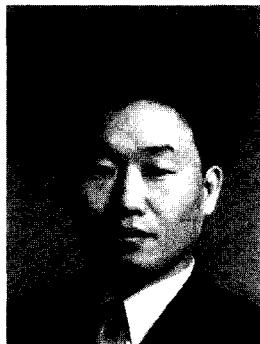


WTO 뉴라운드의 논의동향과 대응방향



권혁준

〈전국경제인연합회 국제경제팀 연구위원〉

■ 目 次 ■

1. 뉴라운드(New Round)의
논의배경 및 진전상황
2. 뉴라운드의 부문별 주요
쟁점
3. 뉴라운드가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향

21세기 국제거래질서의 틀을 구축할 새로운 라운드¹⁾의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뉴라운드는 오는 11월 말 미국 시애틀에서의 WTO 각료회의를 시발로 향후 수년간에 걸쳐 변화하는 국제경제환경에 맞춘 새로운 다자간 규범의 틀의 정립과 보다 자유롭고 공정한(Freer and Fairer Trade) 무역환경의 구축 및 이의 이행을 위한 국내규범의 제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과거 GATT체제하에서 8차에 걸쳐 진행된 라운드와는 근본적으로 성격을 달리하고 있다.

새로운 라운드의 협상의제와 방식, 기간 등은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았으나, UR협정에 따라 99년말 이후 논의하기로 확정된 농산물과 서비스외에도 무역과 연계된 환경, 투자, 전자상거래, 노동기준, 경쟁정책, 정부조달, 부패문제 등 그 논의범위가 광범위하여 뉴라운드 타결에 따른 영향은 무역거래뿐만이 아니고 산업구조와 기업경영관행, 정책방향 및 국민생활 등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분야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렇게 경우에 따라서는 우루과이 라운드의 파급영향을 능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뉴라운드

1) 국제통상용어로서의 라운드(round)는 이해당사국이 협약이 되는 모든 문제를 테이블에 모아놓고 논의하는 것을 의미함. 새로운 라운드의 명칭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며, 뉴 라운드는 밀레니엄 라운드, 클린턴 라운드, 레온 브리튼 라운드 등으로 불리어지고 있음. 이중 밀레니엄 라운드(Millennium Round)란 명칭은 Leon Brittan EU 집행위원장이 회의 개시연도가 새로운 밀레니엄이 시작되는 해라는 점에 착안하여 붙인 것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음

에 대해서, 아직 국내에서는 그 관심이나 준비 상황이 만족할 만한 수준에 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본고에서는 뉴라운드가 논의되게 된 경제적 배경과 현재까지 논의의 진행상황, 뉴라운드에서 논의될 가능성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되는 이슈의 부문별 쟁점 및 뉴라운드의 타결이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간단히 살펴보기로 한다.

1. 뉴라운드(New Round)의 논의 배경 및 진전상황

뉴라운드에 대한 논의는 1996년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1차 WTO 각료회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우루과이라운드(UR) 협정에서 후속협상과제로 유보되었던 농산물·서비스 분야 등의 기설정의제(Built-In Agenda; BIA)에 대한 추가적인 후속협상 논의에서 출발하였다고 볼 수 있다. 1994년 타결된 우루과이 라운드는 농산물 및 서비스 분야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한 최초의 라운드였으나, 시장접근 등의 면에서 제한적인 개방에 그쳤으며, 이에 따라 협상종료시부터 99년 말 이후 서비스 분야와 함께 재협상을 한다는 데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었다.

이와 같이 뉴라운드의 논의 범위가 최초의 농산물 및 서비스분야 등 기설정의제에서 무역과 연계된 환경, 경쟁정책 등 광범위한 분야로 확대된 데에는 우루과이 라운드 이후의 교통·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국제거래방식의 발전 등 경제환경 변화를 규율할 수 있는 국제적인 합의가 필요했고, 세계경제의 통합 진전 등으로 지구촌 어느 곳에서나 통용될 수 있는 단일규범의 정립이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최근들어 새로운 상거래방식으로 자리잡고 있는 전자상거래는 그 규모가 2003년에는

약 3조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으나, 이에 관련된 관세, 기타 조세, 지적재산권 문제 등을 규율할 수 있는 다자간 무역규범은 아직 존재하지 않는 형편이다. 기업경쟁력 확보를 위한 전세계적 차원의 생산시설 최적화의 일환으로 기업의 해외직접투자는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나, OECD의 다자간 투자협정(MAI)이 실패로 끝난 이후 국제적 투자관계를 규율할 수 있는 다자간 투자규범은 아직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정부조달에 대한 투명성 확보, 기업활동에서의 부패방지, 공정한 경쟁여건 조성, 불합리한 노동력 이용 개선, 지역협정의 확산에 대한 대응, 환경문제 등 무역과 연계된 새로운 통상이슈들에 대한 국제적 규범의 제정문제가 선진국을 중심으로 꾸준하게 제기되어 오고 있다. 이밖에 규제개혁, 기업지배구조 등의 문제도 OECD를 비롯한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최근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이와 같은 경제환경의 변화와 규범제정에 대한 필요성 증가를 배경으로 각국 정부 및 국제기구 등은 뉴라운드 논의를 본격화하였다. APEC, OECD, ASEM, WTO 등 각종 국제기구는 각료회의 및 이사회 등을 통해 변화된 국제무역환경을 규율할 수 있는 규범제정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부문별 논의를 계속하여 오고 있다. 각국 정부 또한 4자(Quad) 통상장관회의, OECD 각료이사회, ASEM 통상장관회의 등을 통해 뉴라운드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조속한 무역자유화 협상을 위한 방안마련에 노력하고 있다.

뉴라운드에 대한 국별 입장을 살펴보면 일본과 EU 등은 포괄적인 분야를 대상으로 일괄적인 방식으로 협상하자는 입장이며, 미국은 그동안 정보기술협정(ITA), 기본통신협상 등과 같은 부문별협상을 선호하여 뉴라운드 논

의에 소극적인 입장을 보였으나, 최근 들어 크게 증가하고 있는 무역적자의 해결과 민간업계의 참여요구, 국제무역에서의 주도권 회복 등을 위해 적극적인 자세로 전환하고 있다. 미국중심의 무역체제에 불만이 있는 유럽국가들과 캐나다, 뉴질랜드, 아르헨티나 등 농산물 수출국그룹(Cairns Group), 헝가리, 멕시코 등의 국가들도 뉴라운드 논의에 적극적이다.

반면 아세안, 인도, 이집트 등 대부분의 개도국들은 새로운 협상보다는 기존 WTO협정의 충실향을 강조하며 추가적 자유화 논의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며, 차기협상은 농산물, 서비스 등의 기설정의제를 중심으로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개도국들은 특히 농산물 및 섬유분야에 있어서 우루파이 라운드 협상결과의 이행에 있어서의 개도국에 대한 고려미흡과 협정상의 결함으로 이행이 어렵다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한편, WTO는 99년말 시애틀 각료회의에서 협상범위를 확정하고, 2000년부터 다자간 협상을 시작해 2003년까지는 협상을 타결한다는 기본계획을 갖고 있다. 98년 5월 개최된 제2차 WTO 각료회의에서는 98. 9월 중 일반이사회 특별회의를 개최하고 광범위한 무역자유화(further liberalization sufficiently broad-based) 문제를 포함한 WTO의 향후 작업계획에 관하여 논의를 개시하기로 결정한 바 있으며, 98년 9월~99년 1월까지 매월 비공식회의를 개최하고 WTO 협정의 이행관련사항, 기설정의제, 최빈개도국 지원문제, 무역-투자, 무역-경쟁정책, 무역-환경, 정부조달 투명성 문제 등을 논의하였다.

99년 2월 이후에는 제3차 각료회의 전까지 3단계로 나누어 협상범위 및 방식, 일정 등에

대한 각국 제안수렴을 통해 각료회의에 제출할 권고안을 확정할 계획으로 논의를 진행시켜 나가고 있다. WTO는 비공식회의와 이사회 논의 등을 통해 제3차 각료회의에 제출할 일반이사회 권고의 세부내용으로 기존 WTO협정의 이행 관련 사항, WTO 협정에 규정된 후속협상(Built-In Agenda), 기타 마라케쉬 협정²⁾ 및 결정에 규정된 작업, 싱가폴 각료회의(96년 제1차 WTO 각료회의) 결정에 따라 진행중인 작업과 관련된 사항, 최빈개도국관련 고위급회의 후속조치, 회원국들이 제기하는 기타 사항 등을 제출하기로 합의를 모은 바 있다.

특히 99. 3월 이후에는 의제선정을 위한 2단계 작업을 진행하여 약 130개의 제안서가 제출되었으며, 7월 후반부에는 2단계 작업 마무리를 위하여 일반이사회 비공식회의를 매일 개최하여 각국의 제안서에 대한 논의를 진행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9월 이후에는 공산품 시장접근 분야, 무역과 환경 등 7월 비공식회의에서 마무리하지 못한 분야에 대한 일반이사회의 검토와 함께 11월말 시애틀 각료회의의 각료선언문 작성을 위한 작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2. 뉴라운드의 부문별 주요 쟁점

뉴라운드는 국제무역의 원활화를 위해 국내제도와 관행에 관한 국제적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 주요 관심사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과거의 관세 및 비관세 장벽 등 시장접근분야를 중심으로 논의된 기존의 라운드와 구별되는 특징을 갖고 있다. 아직까지 UR에서 타결되지 못한채 후속협상이 계획되어 있는 기설

2) 1994년 4월 UR 의정서에의 서명을 위해 개최된 마라케쉬(Marrakesh) 각료회의에서 합의된 세계무역기구(WTO)설립협정을 의미함

정의제를 제외하고는 아직까지 협상의 범위, 방식, 기한 등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이며, 오는 11.30일~12.3일 미국 시애틀에서 열리는 제3차 WTO 각료회의에서 뉴라운드의 구체적인 협상범위와 방법, 기간 등이 결정될 예정이다. 이하에서는 뉴라운드에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는 주요 이슈별로 쟁점과 각국의 입장을 간단히 살펴보기로 한다.

1) 기설정의제

(1) WTO 협정 이행문제

WTO 협정이 충실히 이행되어야 한다는 원칙에 대해서는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 공감하고 있으나 이행의 구체적 내용면에서는 의견을 표출하고 있다.

미국, 일본 등의 선진국들은 이행을 위한 국내조치, 이행상황 통보 규정을 준수할 것을 촉구하고, 이행에 대한 과도기간 연장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반면, 개도국들은 이행을 위한 기술협력 및 개도국에 대한 특별우대조치의 불충분성 등을 지적하며 협정규정의 결함으로 인한 이행상의 어려움을 강조하고 있다.

분야별로는 선진국들이 주로 농산물, 서비스, 시장접근 분야의 보다 충실히 이행을 위한 개선 필요성을 제기하고, TBT/SPS협정, 원산지 규정협정, 관세평가협정 등의 충실히 이행을 강조하고 있는데 반해, 개도국들은 섬유분야의 시장접근 확대, 반덤핑협정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개정, TRIPs, TRIMs 등의 이행유예기간 연장을 집중 거론하고 있다.

2) 서비스

서비스 분야는 우편, 건설, 법률, 통신, 금융 등 18개분야³⁾에 대해 후속협상 가이드라인 및 절차작성, 서비스분류 개선·통계·스케줄링 가이드라인 문제, 국내규제, GATS(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 체계 조정, 최혜국대우 의무면제조차, 긴급세이프가드·보조금·정부조달에 관한 규범제정 등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UR후 기본통신과 금융서비스, 인력이동 분야에서는 대체적인 합의가 이루어 졌으며, 기본 해운서비스문제는 2000년 서비스협상때 다시 논의하기로 의견일치를 본 바 있다. 따라서 뉴라운드에서는 이들 문제와 함께 법률, 회계를 비롯한 전문서비스 시장의 추가자유화 문제가 깊이 있게 다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 호주, 캐나다 등의 선진국은 특히 전문서비스 분야는 시장개방이 이루어지더라도 자격요건 및 절차, 기술표준 면허요건 등과 같은 국내규제로 시장개방의 실질적 효과가 없는 점을 고려하여 이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협상방식으로는 선진국들은 대체로 모든 분야에 걸쳐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formula방식'을, 개도국들은 UR때와 같이 'Request and Offer 방식'을 선호하는 경향이나 대부분의 회원국들은 formula 방식도 R/O방식에 보완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신축적인 입장이다.

3) 농산물

농산물에 관련된 후속협상은 미국을 비롯한 농산물 수출국그룹(Cairns Group)과 한국 등을

3) 후속협상 18개 분야는 우편서비스 및 상업서류송달업, 시청각서비스, 건설 및 엔지니어링, 유통서비스, 법률서비스, 광고서비스, 건축 및 엔지니어링, 환경서비스, 교육서비스, 의료 및 사회서비스, 관광서비스, 에너지, 운송서비스, 금융, 회계, 자연인의 주재, 통신 등임

포함한 농산물 수입국가들간에 국내보조 및 관세쿼터(TRQ: Tariff-Rate Quotas), 특별긴급 수입제한조치, 고율의 관세문제 등을 둘러싸고 입장차가 두드러지고 있다. 농산물 수출국들은 수출보조의 전면적 폐지 및 관세의 대폭 인하 등 적극적인 자유화를 주장하고 있는 반면, 농산물 수입국들은 비교역적 기능(Non-Trade Concerns)을 비롯한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부각하며 농산물시장 자유화에 있어서의 신축적, 점진적 접근방식을 주장하고 있다. 농산물 후속협상의 일정 및 형식(modalities)을 둘러싸고 농산물 수출국들은 조속한 협상개시 및 이행에 필요한 국내조치완료와 함께 농산물 협상이 여타 분야의 협상에 영향받아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반면, 한국·일본·EU 등은 농산물 후속협상이 포괄적 뉴라운드 협상의 일부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호주, 미국, 아르헨티나, 캐나다 등 농산물 수출국들은 99년말 협상개시, 2002년 협상종료, 2003년 이행에 필요한 국내조치 완료, 2004년부터 협상결과 이행이라는 일정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일본은 농산물 교역이 SPS협정, 보조금협정 등 다른분야의 협상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만큼 뉴라운드에서 포괄적 협상의 일부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97년 하반기부터 진행된 WTO 농업위원회의 정보교환 및 분석작업(AIE)에서는 초기에는 WTO 협정이행문제가 주로 논의되었으나, 98. 6월 이후 긴급수입제한조치의 존속문제, 허용보조금(green box)범위 축소문제, 농업의 NTC 측면등 농산물 후속협상과 관련한 의제가 주로 논의되고 있다.

2) 뉴라운드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신통상 이슈

(1) 전자상거래

다음으로 뉴라운드 의제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이슈를 부분별로 살펴보면, 우선 전자상거래의 경우 미국⁴⁾을 중심으로 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 활성화 및 자유화를 위한 국제적 논의가 급진전되고 있으며, 민간자율과 정부 개입최소화의 원칙이 중요하게 논의되고 있다. 전자상거래는 2차 WTO 각료회의(98.5)에서 처음 공식의제로 채택된 이후 무관세화 및 신규과세 금지, 사생활보호 및 정보 보안성 확보 등에 대해 추후 논의가 전전될 전망이다. 전자상거래에서는 인터넷으로 전송되는 전송물의 정의, 기술표준, 인증 및 상호인정, 내국세 및 관세, 부과금 부과여부 등의 문제가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전자상거래는 뉴라운드의 독자적인 협상분야로 취급될 수도 있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서비스 후속협상, 지적재산권 협정 등 기설정의제의 일부로 논의될 가능성도 있다. 뉴라운드의 포함여부에 대해서는 미국이 전자상거래 논의에 적극적이며 EU는 뉴라운드의 일부는 아니지만 제3차 각료회의에서 채택여부를 결정하자는 입장이다. 홍콩은 제3차 각료회의에 어떤 WTO 규정이 적용되어야 하는지에 관한 권고안을 제출하겠다는 입장이며, 인도는 제반 관련문제를 충분히 검토한 후 결정하자는 입장이다. 전자상거래 작업계획에 따른 각 산하기구(서비스이사회, 상품이사회, TRIPs이사회)의 보고서가 제출된 가운데 보고서의 처리문제를 놓고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으나 아직 합의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 무역과 경쟁정책

4) 98년말 현재 전세계 전자상거래의 85%가 미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추계되고 있음

경쟁정책의 경우 WTO체제 출범으로 국경 간 무역장벽은 완화되고 있으나 각국 국내시장에 존재하고 있는 경쟁제한적 제도, 관행 등으로 국경 내부로의 시장접근이 방해받고 있다는 인식에 따라 논의가 확산되고 있다. 경쟁정책은 70년대까지만해도 주로 미국에서만 논의되는 문제였으나 80년대 이래 EU가 경쟁촉진 관련법을 강력히 집행하기 시작하면서 선진국 기업활동을 규율하는 공통규범이 되고 있다. 90년대 이후에는 경쟁정책과 무역정책의 조화문제와 각국 경쟁정책의 조화를 위한 다자간 규범의 제정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다. WTO에서는 1차 각료회의 이후 무역과 경쟁작업반이 설치되어 개념, 원칙,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상호관계 등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뉴라운드의 의제로 포함될 경우 반덤핑조치 등을 포함한 무역과 경쟁정책의 상호관계, 경제성장 및 개발에 대한 관계, 반덤핑협정 및 무역관련기술장벽협정(TBT)의 경쟁지향적 개선 문제 등이 주요 쟁점사항이 될 전망이다. 뉴라운드 포함여부에 대해서 EU, 캐나다, 평가리 등의 중동구국, 칠레, 멕시코, 호주 등은 이를 포함시키자는 입장이며, 일본, 뉴질랜드, 노르웨이 등은 다자간 규범수립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EU는 현실적으로 가능한 내용이어야 한다는 입장으로, 무차별원칙 등 WTO의 기본원칙에 기초한 공통원칙, 국제협력증진, 반경쟁행위 규제 및 개도국 이익반영 등 4개의 목표를 제시한바 있다. 미국은 경쟁정책문제가 다자간 협상의제로 성숙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의제채택에 반대하고 있으며, 특히 최소공배수 접근방법에 기초한 다자간 규범의 가치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으나, 현재의 작업반 처리방안에 대하여는 개방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파키스탄, 인도, 아세안, 쿠바 등 다수의 개도국은 다자간 규범수립에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3) 무역과 환경

무역과 환경분야는 환경관련 무역조치를 원하는 선진국과 개발을 위해 어느정도 환경침해가 불가피하다는 개도국의 입장이 대립되고 있다. WTO 무역환경위원회(CTE: Committee on Trade and Environment)는 무역과 환경의 상관관계에 대한 10개의제를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국제환경협약상의 무역조치를 WTO 체제내에 수용하는 문제, 환경목적의 부과금·조세문제, 제품과 무관한 공정 및 생산방식에 대한 규율문제(NP PPM: Non Product Related Process and Production Method), 무역제한 및 왜곡조치의 제거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 환경조치의 시장접근 문제 등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EU, 캐나다, 노르웨이 등은 환경문제가 뉴라운드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며 일본은 수용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미국은 WTO의 향후과제(forward agenda)에는 포함될 수 있으나 뉴라운드에의 포함여부는 추후에 결정하자는 입장이다. 반면 인도, 파키스탄, 멕시코, 쿠바, 이집트 등의 개도국은 환경관련 협상의 타결결과가 자국수출품의 시장접근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하여 뉴라운드를 포함하여 무역과 환경문제관련 협상개시에 반대하고 있다.

(4) 무역과 투자

무역과 투자는 80년대 이후 해외직접투자의 급증에 따라 현행투자관련 협정인 TRIMs, TRIPs 및 GATS 등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인식하에 WTO차원에서의 규범을 만들자는 것이다. 96년 제1차 WTO 각료회의 이후 WTO의 무역-투자작업반은 기준 국제협정에 대한 분석과 무역과 투자의 상호관계, 투자인센티브

의 규제문제, 무역과 투자가 경제개발에 미치는 영향 등을 대상으로 작업을 지속하고 있다. OECD에서는 다자간투자협정(MAI)의 합의도 출에 실패한 이후 이문제를 뉴라운드의 일부로 다시 논의한다는 입장이다. EU, 일본, 캐나다 등 대부분의 선진국과 중동구국 등은 무역-투자문제를 뉴라운드에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 찬성하고 있으며, 미국은 뉴라운드에의 포함여부 결정은 아직 시기상조라는 입장이었으나, 최근 WTO가 다자간 투자규범을 협의하기 위한 적절한 기구라는 데 동의를 표하는 등 다소 신축적인 입장이다. 반면, 브라질, 인도, 아세안 등의 개도국들은 UNCTAD가 보다 적절한 투자논의의 장이고, 투자에 대한 최혜국 대우 및 내국민대우가 외국인투자유치와 개발정책에 대한 개별국의 경제정책수단 선택을 제한하며, 다자간투자규범이 투자를 촉진한다는 증거가 없고, 서비스분야와는 달리 상품무역에서는 투자가 필요조건이 아니며 오히려 각종 무역규제를 우회하는 수단으로 활용하는 측면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WTO에서의 다자간 규범수립에 반대하지만 WTO 작업반에서의 분석적 작업은 지지한다는 입장이다.

(5) 정부조달 투명성

정부조달에 대한 투명성 논의는 정부구매의 부패가 무역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인식하에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선진국의 국제규범수립을 위한 제안에 의해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WTO에서는 실무작업반을 구성하여 기존 국제기구의 정부조달 투명성에 대한 규정 및 국별 관행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조달의 정의와 범위, 조달의 방법, 국내입법 및 절차에 관한 정보, 조달기회, 입찰, 자격조건 결정의 투명성, 낙찰결정의 투명성, 이의제기 절차 등이 논의 대상이 될 전망이다. 미국, 캐나다, 일본

등 선진국은 작업반에서 투명성 협정의 협상을 개시하자는 입장이며, 우리나라 및 일본은 제3차 각료회의시까지 협상이 종료되지 않으면 뉴라운드 의제로 포함시킬 것을 제의하였고, EU는 제3차 각료회의에서 협상개시여부를 결정하자는 입장이다. 다수의 개도국은 정부조달 투명성 작업반에서 아직 합의하지 못한 사항이 많으므로 시애틀에서의 협정타결 또는 다자규범 수립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며, 따라서 정부조달 투명성 논의가 구속력있는 협정으로 채택되거나 정부조달분야의 시장 접근 확대를 위한 방안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으로 시애틀에서는 작업반 활동의 연장만 결정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6) 지역협정

WTO의 지역협정위원회에서는 지역주의가 다자체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분석의 필요성, 개별지역협정의 검토절차의 효율화 및 검토보고서의 주요내용, GATT 제24조의 기타무역규정(Other regulations of Commerce)과 실질적으로 모든 교역(Substantially all the trade)에 대한 해석문제와 개정 필요성 등에 대해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한국, 일본, 홍콩 등 지역협정 미가입국가들은 주요쟁점들을 해결하고 다자체제에 부합시키기 위하여 뉴라운드의 의제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미국, 캐나다는 논의에 소극적인 것으로 보이며, EU는 자유무역협정 등 지역주의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의제포함을 지지하는 입장이다. 지역주의가 확산되고 있는 중남미, 동구권, ASEAN 등은 의제포함에 반대하고 있다.

(7) 반덤핑협정

반덤핑협정은 WTO 반덤핑위원회 산하의

우회덤핑 비공식그룹, 경쟁정책 작업반, 분쟁 해결절차, 원산지규정위원회 등에서 논의가 행해지고 있다. 우회덤핑 비공식그룹에서는 미국, EU 등이 우회덤핑의 예로 제품의 사소한 변경, 수입국 또는 제3국에서의 조립, 제3국을 통한 환적, 원산지, 세번분류 등의 부정확한 신고를 통한 기만적 수입절차를 지적하고 있으며, 한국, 일본, 홍콩 등은 기만적 수입절차 외에는 우회덤핑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쟁정책 작업반에서는 무역과 경쟁정책에 관한 논의에 반덤핑문제를 포함시키자는 한국, 일본, 뉴질랜드의 주장에 미국이 반대하는 상황이며, 원산지규정 위원회에서는 우회덤핑 문제를 통일원산지 규정을 통해 접근하고 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반덤핑조치의 대상이 되었던 국가에서 제기하고 있는 주요 쟁점은 분쟁해결 특별규정, 반덤핑조치의 남용규제 및 조사당국의 지연책임 부담, 본조사절차규정의 재심절차에 대한 적용 확대, 반덤핑협정에의 경쟁법적 시각반영 등이 될 전망이다. 분쟁해결 특별규정의 경우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폐널이 다른의결에 도달하더라도 변복이 불가능한 문제와 복수의 해석이 가능한 경우 이중 어느것에 기초한 조사당국의 조치도 협정에 합치하는 것으로 판정하는데 대한 규정의 폐지 또는 이의제시가 있다. 수입국의 무분별한 조사개시, 재심 및 짐정조치 등 절차지연, 노동조합의 제소자격에 대한 검토 등도 주요 쟁점사항이다. 재심과정에 증거관련규정만 적용 토록 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조사 관련규정을 폭넓게 적용하는 문제도 논의 대상이 될 가능성성이 있다. 반덤핑조치가 소비자의 후생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문제에 대한 논의, 반덤핑조치의 발효시 공공

의 이익을 고려하도록 하는 문제, 반덤핑관세 액을 덤픽마진과 피해마진중 적은 것을 부과 (lesser duty rule)하는 문제 등이다.

(8) 공산품 시장접근, 무역원활화 문제 등

이밖에 뉴라운드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의제로는 일부품목의 무세화를 비롯한 공산품 관세의 인하 문제, 무역원활화를 위한 조치문제, 지적재산권 문제, 통일원산지 제정문제, 분쟁해결절차 규정 및 보조금·상계조치 협정, 아동노동 등을 비롯한 노동기준의 문제에 대한 검토 등이 있다. 공산품 관세인하는 선진국을 중심으로 주장되고 있으며 개도국은 소극적 입장이다. EU는 예외없이 모든 품목을 대상으로 하여 양허하는 협상을 선호하는 입장이나 미국, 호주, 일본 등 다수국은 현실성 없는 주장이라하여 반대하고 있다. 협상의 방식은 EU가 모든 품목을 대상으로 하는 formula 방식을 기초로 한 고관세 관세율경사구조, 과소관세 철폐를 희망하고 있는데 비해, 미국은 peak 유지를 위해 R/O 방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일본 등 다수국가는 formula 방식을 중심으로 UR때와 같은 다양한 방식의 혼용을 제의하고 있다. 개도국은 선진국의 추가 관세인하 여지가 적은 상태에서 관세인하협상이 개도국을 주대상으로 할 것이라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포괄적 관세인하와 함께 정보기술상품에 대한 추가적인 무관세화 협상 및 UR 당시의 zero-for-zero 원칙⁵⁾, 관세조화 방식에 대한 합의를 바탕으로 한 부문별 인하 추진 등의 문제가 논의될 전망이다.

무역원활화 문제는 관세분류·평가 및 원산

5) UR 협상에서는 의약품, 의료장비, 건설장비, 철강 등 7개부문에 대해서는 무관세화시키고 2개 부문(반도체, 산업용전자 등 전자부문)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무세화시키기로 하였음

지판정 등 통관절차를 규율하는 신규범도입, 세관절차 간소화 및 조화를 위한 Kyoto협약⁶⁾과의 연계, 수출입절차 간소화, 국별 관련규정 및 서류 표준화, 무역관련 국제 대금결제를 규율하는 신규범 제정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 선진국들은 원칙적으로 지지하는 입장이나 무역 원활화의 대상범위와 modality에 있어서 상이한 접근방식을 보이고 있다. EU는 WTO기본 원칙의 적용, 통관절차의 단순화 및 조화, 자동화 등 신기술 도입 측면을 강조하고 있는데 비해, 미국은 투명성, 신속통관을 목표로 한 제도개혁을 강조하고 있고, 일본은 기존협정의 이행 및 개도국의 이행상 문제점 극복방안을 강조하고 있다. 다수의 개도국들은 무역원활화 관련 WTO 기존협정이 이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관한 새로운 협상은 추가부담만 야기하므로 지난 2년간 상품무역이사회 논의결과 나타난 제반 이슈들에 대한 연구분석 작업이 계속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인도는 기존 WTO 협정(관세평가, 원산지, 수입허가, 선적전 검사 등) 운용경험으로 부터의 피드백도 초보적인 단계라는 점, 무역원활화는 관행이나 절차에 관한 것이므로 규범화대상이 아니라는 점, 이분야 논의에 대한 WCO의 주도적 역할을 인정해야 한다는 점 등을 들어 반대하고 있다.

3. 뉴라운드가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향

2000년 이후 본격화할 뉴라운드에서는 종래에 세계 각국의 고유문제로 간주됐던 정책, 기준, 관행, 국민의식 등까지 통일시키는 등 공정한 경쟁기반 조성을 위한 다자간 규범 제정

이 크게 진전될 전망이다. 따라서 국가간 통상 마찰을 줄이기 위해 다자간 협의외에 한·미 양국간 협력 등 양자간의 의견조율을 통해서도 협상에 관련된 의견차를 좁히는 노력을 지속해야 할 것이다.

농산물시장의 경우 미국 등 농산물 수출국들이 수출 및 국내보조의 전면적인 폐지 및 관세의 대폭인하 등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일본이 99년 4월 쌀의 조기관세화를 결정함에 따라 한국은 WTO 농업협정상 관세화원칙의 유일한 예외로 남게 되어 2003년까지 보장되어 있는 쌀의 관세화 유예조치가 조기 거론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현행 WTO 농업협정의 기본틀을 유지하고, 쌀 관세화 조기 거론에 대비하여 점진적 개방 및 단계적 관세 인하 등 모든 국가가 동참할 수 있는 신축적이고 점진적인 접근방법을 채택하여야 할 것이다. 쌀시장의 전면 개방에 대한 요구도 거세어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최소시장접근물량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수준에서 협상이 마무리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농업의 비교역적측면·다원적 기능에 대한 강조 등 쌀시장의 추가개방 압력에 최대한 대비하는 한편, 농업 투·융자사업 등 각종 농산물 보조정책은 국제기준의 변화추세에 맞추어 점진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서비스의 경우 OECD 가입 및 IMF의 정책 권고 등에 따른 시장개방 진전으로 개방에 따른 부담이 상당히 줄어 들었다. 금융서비스와 기본통신서비스부문에서는 이미 WTO의 협상을 통해 다자간 합의가 상당히 진전된 상태이며, 관광 및 유통서비스 등도 상당히 개방된 상태로 큰 영향은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법률, 시청각, 방송, 환경, 의료서비스

6) 세계관세기구(WCO)의 주관하에 체결된 통관절차간소화에 관한 국제협약인 Kyoto협약을 의미하는 것으로 97년 기후변화협약에 관해 채택된 교토협약과는 구별됨

등은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약하다고 평가되는 부문에 대해서는 경제환경변화에 큰 영향을 미치는 분야이므로 어느정도의 타격이 예상된다. 긍정적인 면에서는 이를 해당분야의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로 삼을 수도 있으며, 건설, 해운 등의 분야에서는 다른나라의 개방을 적극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협상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공산품의 관세인하가 뉴라운드에서 논의될 경우 선진국의 관세인하 및 비관세장벽 철폐 요구가 커질 것으로 보이며 우리나라의 경우 조정관세제도 철폐, UR 비양허품목의 추가양허를 요구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의 그동안 많은 무역자유화 조치를 취해 관세가 이미 6~7%수준으로 떨어졌다. 따라서 농산물을 제외한 다른 분야에서 추가인하 부담은 그리 크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아직도 상대적으로 높은 부문으로 남아있는 섬유, 신발, 가죽제품, 농산물 등의 선진국의 고관세율 인하와 개도국의 양허확대를 적극 주장해야 한다. 또한 주요 교역상대국에 대해 적극적으로 양허폭 확대, 최고관세율(Tariff Peak) 제거 등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 비양허품목에 대해서 개도국들은 높은 관세율 적용 및 수입과징금 등 수입규제수단을 발동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공산품의 경우 우리에게 유리한 관세인하 방식을 마련을 위한 공격적인 협상전략을 통해 적극적인 시장접근 확대를 모색해야 한다. 비관세장벽 철폐는 이미 수입선다변화제도가 오는 6월 철폐되는 등 제도개선이 많이 이루어져 부담이 덜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개도국의 비관세장벽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뉴라운드에서의 이의 시정을 위한 협상력을 강화해야 한다.

전자상거래에는 우리나라에서도 이용자 및 개설자 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정부에서도 전자거래기본법과 전자서명법의 발효를 서두르

고 있는 등 대응책을 준비하고 있다. 전자상거래에 있어서의 무관세화 및 추가적 조세 부과 등이 이루어지지 않는 방향으로 타결된다면, 우리의 수출증대에도 기여할 수 있으므로 국제기구 등의 각종 관련회의 등의 참가를 통해 국제규범화 작업에 우리의 입장을 반영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경쟁정책은 OECD 가입국인 우리나라의 경우 이미 경성카르텔의 규제를 수용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이에 맞추어 국내법에의 반영 절차도 진행하고 있는 등 이를 수용하는데 큰 문제가 없으므로 개도국 등의 수용을 위한 협상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경쟁정책의 국제규범화 확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월 카르텔 일괄 정리법을 제정하여 개별 법률에 의해 인정돼온 카르텔을 폐지하고 부당한 카르텔을 당연 위법으로 엄격히 금지하여 국내제도에 반영시키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경쟁정책과 연계하여 선진국의 남용행태가 나타나고 있는 반덤핑 정책 등의 자의적 행사를 방지하기 위한 협상전략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환경은 기후변화협약 등 환경협약 위반에 따른 무역제한조치를 WTO차원에서 수용하는 문제와, 비환경친화적인 제품공정에서 나온 제품을 WTO 규범으로 규제하는 문제가 쟁택될 경우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의 환경수준에 비추어 볼 때 환경보호목적의 무역규제는 큰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환경보호와 무역자유화를 균형있게 조화하는 방향에서 협정이 타결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정부조달 협정의 경우 OECD에서는 이미 뇌물방지협약을 제정하였고 우리나라도 이미 국내법규화를 마친 상태이므로 여타국에서의 우리 기업 등의 차별대우 방지를 위해 국제규범화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지역

협정은 의제에 포함된다 할지라도 GATT 규정이 지역주의에 대한 실효성 있는 규제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강화될 가능성은 별로 높다고 해석되지 않는다. 97년 말 현재 지역협정의 수는 145개로 주요 무역국 중 지역협정에 가입하지 않고 있는 국가는 일본, 한국, 홍콩, 중국 정도에 불과하다. 따라서 우리도 새로운 지역협정의 창설 및 기존협정에의 가입 등과 함께 지역협정이 역외국에 대해 배타적인 규제로 작용하지 않도록 뉴라운드에서의 논의를 강화해야 한다.

선진국 반덤핑 조치의 파규제국인 동시에 반덤핑조치의 당사자로서 우리나라에 가장 유리한 우회방지대상의 범위 및 조치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WTO 반덤핑협정이 기존의 협정에 비해 명료화되고 남용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개선되고 있으나 아직도 미국, EU 등의 국가들의 이익을 반영하는 방향에서 운용되거나 해석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뉴라운드 협상에서의 이의 시정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즉 미국과 EU의 반덤핑조치가 일방적인 것이란 데 문제를 삼고, 미국 행정부의 조사개시 조치만으로 상당한 타격을 입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우리와 같은 입장을 가진 일본, 캐나다 등과 공동보조를 취할 필요가 있다. 이밖에 반덤핑분야에서는 우회덤핑 인정폭을 최소화할 것을 주장하고, 조사지연에 따른 수출국 피해에 대한 보상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뉴라운드의 타결에 따른 각종 제도 및 경제 환경 변화는 주류산업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주류산업은 이미

WTO의 발족 이후 분쟁해결절차에 따른 EU의 주세율관련 제소와 한국의 패소로, 주세율체계 재편이 관련기관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으며, 정부에서도 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등 이를 적극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주류 산업은 대체적으로 내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큰 내수산업이나, 최근 들어 외국시장으로의 수출 및 투자진출이 확대되고 있는 등 대외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커지고 있다. 더구나 국내소득수준의 향상과 함께 주류수입이 늘어나고, 외환·금융위기 이후 외국계 회사를 의 국내진출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주류산업도 더 이상 국외환경 변화와 무관하지는 못할 것이다.

뉴라운드의 타결이 주류산업에 미칠 영향은 이와 같은 세율체계의 개편외에도 유통 등 관련서비스 시장의 개방 확대에 따른 마케팅 경쟁의 심화, 환경기준의 강화에 따른 생산공정의 개편과 수출환경의 악화 가능성, 외국사들의 투자진출 확대, 지역적 시장분할 개선 등의 경쟁압력 증대, 주류관련 관세율 인하 요구 증대, 해외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불투명한 거래관행에 대한 시정 요구 등 시장의 경쟁압력이 증가하고 경영관행 및 생산구조를 변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주류 산업계도 이러한 외부환경의 변화를 주시하여 환경변화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하고 적응력을 높여 나가는 한편, 개도국 등의 시장 개방 및 세계시장의 통합 추세, 교역장벽 완화, 해외진출 기회 확대 등을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자세를 갖추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